



사회보험료 지원까지 꼭 챙기세요!

사회보험료 지원방안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 ▶ 지원대상 기준보수
(기준) 월 보수 190만원 미만—(개선) 210만원 미만
- ▶ 10인 미만 사업장 신규가입자 지원수준
5인 미만 보험료의 90%(5~10인 미만 80%)
- 기존 가입자는 40% 지원

❖ 5인 미만 사업장 건강보험료 60% 경감(5~30인 미만 50%)

- ▶ '19년도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규 가입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 4대 보험 신규가입시 세액공제

- ▶ 10인 미만 고용기업 보험료 사용자 실부담금의 50%

4대 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고용보험

- ▶ 사업주: 고용창출 · 안정에 필요한 인건비 등 지원
- ▶ 노동자: 실업급여 · 훈련 등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

❖ 산재보험

- ▶ 산재발생에 따른 사업주의 재정적 · 형사적 부담 해소
- ▶ 산재요양부터 완치까지 의료비, 휴업급여 등 지원

❖ 건강보험

- ▶ 직장가입시 1년 또는 2년에 1회 국가건강검진 실시
- ▶ 퇴직 시 임의계속 가입 적용 가능

❖ 국민연금

- ▶ 평생 동안 매달 월급처럼 꼬박꼬박 지급
- ▶ 매년 물가상승만큼 연금액 인상으로 실질가치 보장

❖ 일자리 안정자금 주요 변경사항

구분	2018년	2019년																		
신청절차	고용보험 신고 + 안정자금 신청	〈'18년 지원사업장〉 별도의 신청서 제출없이 계속 지원 ※ 단, 최저임금준수확인서 제출 〈최초 신청〉 좌동 〈근로자 추가 신청〉 별도 안정자금 신청 없이 고용보험 신고서상 안정자금 희망여부만 체크 단, 공동주택 및 고용보험적용 제외 사업장은 기준과 동일하게 추가 신청																		
지원대상 월평균 보수	〈상용, 주40시간 미만〉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일용〉 1일 87,000원 미만	〈상용, 주40시간 미만〉 월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일용〉 1일 97,000원 이하																		
지원금액	〈상용〉 1인당 월 13만원 ※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상용〉 (5인 미만) 1인당 월 15만원 (5인 이상) 1인당 월 13만원 ※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일용노동자	1개월 동안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 지원 <table border="1"> <thead> <tr> <th>월 근로일수</th> <th>월 지급액</th> </tr> </thead> <tbody> <tr> <td>22일 이상</td> <td>13만원</td> </tr> <tr> <td>19일 이상~ 21일 이하</td> <td>12만원</td> </tr> <tr> <td>15일 이상~ 18일 이하</td> <td>10만원</td> </tr> </tbody> </table>	월 근로일수	월 지급액	22일 이상	13만원	19일 이상~ 21일 이하	12만원	15일 이상~ 18일 이하	10만원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지원 <table border="1"> <thead> <tr> <th>월 근로일수</th> <th>월 지급액</th> </tr> </thead> <tbody> <tr> <td>22일 이상</td> <td>13만원</td> </tr> <tr> <td>19일 이상~ 21일 이하</td> <td>12만원</td> </tr> <tr> <td>15일 이상~ 18일 이하</td> <td>10만원</td> </tr> <tr> <td>10일 이상~ 14일 이하</td> <td>8만원</td> </tr> </tbody> </table>	월 근로일수	월 지급액	22일 이상	13만원	19일 이상~ 21일 이하	12만원	15일 이상~ 18일 이하	10만원	10일 이상~ 14일 이하	8만원
월 근로일수	월 지급액																			
22일 이상	13만원																			
19일 이상~ 21일 이하	12만원																			
15일 이상~ 18일 이하	10만원																			
월 근로일수	월 지급액																			
22일 이상	13만원																			
19일 이상~ 21일 이하	12만원																			
15일 이상~ 18일 이하	10만원																			
10일 이상~ 14일 이하	8만원																			
정기지급일	매월 10, 20일	매월 15일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http://jobfunds.or.kr>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업종에 관계없이 사장님이라면 신청하세요!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이런 경우는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가능

-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300인 미만 사업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지를 둔 300인 미만 사업주
- 공동주택(아파트) 경비·청소원,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자활기업 등은 규모 무관

◆ 최저임금 준수

- ▶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8,350원

◆ 월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 ▶ 재직 중 신청하지 못한 퇴사자도 지원

◆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도 지원
(합법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등)

- 고소득 사업주(개인-사업소득·법인-당기순이익 기준 5억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은 지원 제외
- 특수관계인(대표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휴·폐업 사업주도 지원 제외



1회 신청으로 1년 내내 알아서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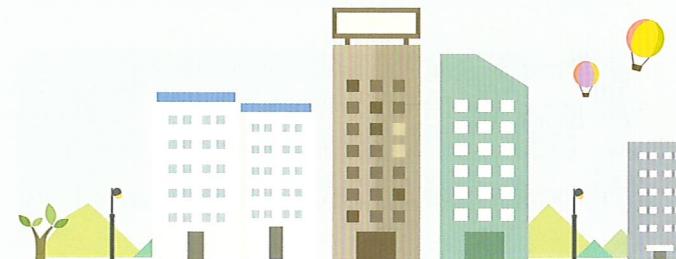
지원금액

◆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 (5인 미만 사업장은 15만원까지)

- ▶ 월중 입·퇴사자는 근로일수 비례 지원
- ▶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원

지원방식

- ◆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
- ◆ 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협료 대납 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
- ◆ 18년 말 기준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신규 신청절차 없이 계속 지원
 - ▶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서 제출



집, 일터에서 바로 가까운 곳에서 접수하세요!

신청서 접수

◆ 온라인

명칭(운영기관)	사이트 주소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근로복지공단)	total.kcomwel.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국민연금공단)	www.4insure.or.kr
건강보험 EDI(국민건강보험공단)	edi.nhis.or.kr
국민연금 EDI(국민연금공단)	edi.nps.or.kr
고용보험(한국고용정보원)	www.ei.go.kr
KT EDI	bips.bizmeka.com

◆ 방문·우편·팩스

- ▶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문의·상담

- ◆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 ☎ 고용노동부 1350

